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〔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(1공구)〕

- 점검일시 : 2019.11.04 (월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이태행

| 지적내용 | 점검사진 | 조치일자 | 조치사진 |
|--|--|--|--|
| | | 조치내용 | |
| <p>○ 감전재해 예방</p> <p>- 가설분전반에 설치 된 50A누전차단기는 누전 차단기능을 상실하여 테스트 장치가 작동 되지 않고 있으니 교체하고, 누전차단기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(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)</p> |  | 2019.11.11 |  |
| | | <p>- 가설분전반에 설치 된 50A누전차단기 교체완료, 누전차단기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였습니다.</p> | |
| 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수직통행로 주변은 안전난간이 누락되어 있어 이동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난간 보완 요망</p> <p>- 벽이음재가 이동통로 폭의 1/3 이상 돌출되어 있어 이동방해 및 충돌 위험이 있으니 보완 조치 요망</p> <p>- 통로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자재 정리</p> <p>- 비계 출입로 설치 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</p> |   | 2019.11.11 |   |
| | | <p>- 수직통행로 주변은 추락위험이 있어 안전난간 설치함.</p> <p>- 벽이음재가 이동통로 폭의 1/3 이상 돌출되어 있어 조치함.</p> <p>- 통로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자재는 정리하였음.</p> <p>- 비계 출입로 설치하였음.</p> |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<p>○ 거푸집동바리 안전</p> <p>- 초안산 지하차도 강재 거푸집 내부에 설치된 경사부재(서포트)는 축압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보이므로, 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 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(조립도)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(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)</p> |   | <p>2019.11.11</p> <p>- 초안산 지하차도 강재 거푸집 내부에 설치된 경사부재(서포트)는 축압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음,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함.</p> |  |
| 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외부 수직철근 배근 작업자는 작업발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추락위험이 있으니, 우마, 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확보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</p> |  | <p>2019.11.11</p> <p>- 외부 수직철근 배근 작업은 추락의 위험이 있어 우마, 비계 등을 설치하였음.</p> |  |
| <p>○ 가설비계 안전</p> <p>- 시스템 동바리를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바리 상부에 과한 자재를 적재하고 작업하지 않도록 작업관리 및 교육 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 업무 등)</p> |  | <p>2019.11.11</p> <p>- 시스템 동바리 상부에 적재한 자재는 이동하였음.</p> |  |

| | | | |
|--|---|--|---|
| <p>○ 가설비계 안전</p> <p>- 비계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부재가 탈락되거나 손상되어 근로자 이동시 처짐이 과하게 발생하니 전수 조사하여 교체 요망</p> <p>- 비계 하부에 설치된 깔목은 받침 철물 크기 이상이 되도록 설치 요망</p> |  | <p>2019.11.11</p> <p>- 비계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부재가 탈락되거나 손상되어 근로자 이동시 처짐이 과하게 발생하니 전수 조사하여 교체 하였음.</p> <p>- 비계 하부받침 철물은 콘크리트 바닥에 직접 설치하였음.</p> |  |
| 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거푸집 작업장은 근로자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근로자 이동시 전도 사고 위험이 없도록 관리 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 |  | <p>2019.11.11</p> <p>- 거푸집 작업장은 근로자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근로자 이동시 전도 사고 위험이 없도록 관리 하였음.</p> |  |